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7일,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예지의원)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

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원인과 동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요인에 적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자살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며 그 효과성을 분석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주기의 단축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개별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의 기준이 되므로 빈번한 기본계획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자살실태조사의 주기 단축은 현재 체계와 비교할 때 자살실태에 대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이나 그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행정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자살률의 급작스러운 증가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계획과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안 제11조제2항은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자살원인 등에 관한 사항을 자살실태조사에 포함시키려는 것인데, 현행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자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적 조치임.

안 제16조는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와 별도로 자살예방기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매년 9월 10일로 정하고 있고, 이는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해당일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서 자살예방의 날이 속하지 않는 별도의 달의 추가적 지정 및 그 밖에 자살예방기간의 지정·

운영은 매년 9월 개최하는 자살예방 교육이나 홍보활동의 사업적 집중도와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 9월에 해외에서도 자살예방 국제적 캠페인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